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7조의3 제1항에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함에 따라, 동 시행령을 인용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(안 제28조 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”
을 “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
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<u>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</u>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.	제28조(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87